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2. 6. .
제출자 : 이 천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구체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 전담 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이천시 정원을 증원하고,
-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대통령령(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)이 개정·공포됨에 따라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집행기관의 정원 “738”을 “739”로 함.
※ 정원승인: 1명(수의6급1)
- 총계란 “754”를 “755”로 함.
- 조례시행에 따른 초과현원 4명(고용직)의 별도정원 인정기간을 2003년2월28일 까지 규정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738”을 “739”로 하고, 총계란의 “754”를 “755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·소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임 철 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인사담당 신 성 현
	담당자 성명·전화	오 재 환 (2107)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
제2조(정원의 총수)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738</u> 2. (생 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739</u> 2. (현 행 과 같 음)
총 계 : <u>754</u>	총 계 : <u>755</u>